

폴란드의 최저임금법 개정내용

1. 폴란드 최저임금법 일부 내용 개정

- 폴란드의 최저임금법(the Minimum Remuneration Act)이 상하원 의결을 거쳐, 2005년 8월 5일 크바시니에프스키 대통령이 개정안에 서명함으로써 2006년부터 적용될 예정임.
- 동 법은 최저임금이 최저생계비보다는 높은 수준에서 결정되도록 보장하고, 실업수당보다 높은 수준으로 설정함으로써 취업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정을 추진하고 있음.

2. 개정된 최저임금법 주요내용

- 최저임금이 전국 평균임금수준의 50%에 미달하는 경우 최저임금은 예상 물가상승률과 예상 GDP성장률의 2/3를 합한 비율 이상으로 결정함.
 - o 그간 폴란드의 최저임금은 2003년도 최저임금을 월 800PLN로 정하고, 물가상승률에 따라 인상하여 왔으나, 실제로는 예상 물가상승률보다 항상 낮은 수준에서 결정되어 왔음(2004년 물가상승률: 3.5%, 2005년 최저임금 증가율: 3.0%).
- 예상 물가상승률과 실제 물가상승률 간에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동 차이를 차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반영함.

3. 최저임금법 개정에 따른 영향과 전망

-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2006년도 폴란드의 최저임금은 예상 물가상승률(1.5%)과 예상 GDP성장률(4%)의 2/3를 합한 약 4.2%만큼 인상될 전망이다(884PLN).
 - 최저임금 추이: 800PLN(2003년) → 824PLN(2004년) → 849PLN(2005년)
- 이에 따라, 폴란드의 최저임금은 현재 평균임금의 35% 수준에서 50% 수준으로 점차 높아질 전망이다.
 - 평균임금이 향후 수년간 물가상승률과 GDP성장률에 따라 매년 5%씩 증가할 경우, 4~5년 이내(2010년경)에 평균임금의 50% 수준에 도달
- 따라서, 높은 수준의 최저임금은 노동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함으로써 높은 인건비와 낮은 수익성으로 오히려 고용을 감소시킬 우려가 있음.
 - 최저임금 수준의 노동자를 기준으로 고용비용은 약 16.7% 상승하여, 새로운 일자리 창출 등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시각
- 한편, 금번 폴란드의 최저임금법 개정은 폴란드에 이미 진출해있는 우리 기업에도 장기적으로는 인건비 상승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.
 - 폴란드 통계청의 발표에 의하면, 전년도 평균임금수준에 따라 의무적으로 불입해야 하는 종업원 복지기금(Social Fund) 불입과 지방소재 기업의 생산직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인상 등의 부담이 있음.

※참고: 2005년도 폴란드 최저임금, 최저생계비, 실업수당 수준

- 최저임금: 월 총(gross) 849PLN (고용주 부담 사회보장세 포함시 종업원 1인 고용에 따른 소요 최소 인건비는 월 1,040PLN)
- 최저생계비: 월 823PLN
- 최대 실업수당: 월 531PLN

<자료제공: 폴란드주재원>

전문연구원 최은경 (☎3779-6665)
E-mail : ericachoi@koreaexim.go.kr